

검 토 보 고 서

2003.7.14(월)

- ☐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- ☐ 2003년 6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
 - **충북과학대학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**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☐ 먼저,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
 - 동대학의 효율적인 학사행정,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, 교육기반 시설의 확충 등 종합발전 업무를 심의하는
 - 대학운영위원회의 임명직 및 위촉직 위원을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변경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.
- ☐ 주요골자로는
 - 안 제4조 제3항의 충청북도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및 경제적·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임명·위촉하는 자를
 - **당연직**위원은·1) 충청북도의회교육사회위원장 2) 기획관리실장 3) 옥천군수 4) 충북과학대학교학과장으로 하고
 - 위촉직 위원은 대학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
☐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

- 먼저,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기존에 운영 해오던 동대학운영위원회의 임명직 공무원의 대상과 범위를 당연직위원으로 명시해야만 하는 개정의 타당성과(실익)
- 동대학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인 교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사업(안 제5조)등을 심의함에 있어,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지 여부
- 그리고 제214회 임시회기중 도정질문에서도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동대학의 독자생존을 위한 동 위원회 차원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하여도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☐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☐ 감사합니다.